

가격조정명령처분취소

소송종류	행정소송	법원명	서울고등법원
사건번호	2015누○○○○○	사건유형	조정명령
원고	주식회사 □□□ 외 4	피고	인천광역시교육감 외 8
판결선고일	2019. 5. 16.	비고	(1심)서울행정법원 2014구합○○○○○ 2015. 1. 15. 원고일부승
사건개요	원고 주식회사 □□□ 외 4개 업체는 초·중·고등학교에서 사용되는 검·인정 교과용 도서 출판하는 출판사들로 교육부 및 인천광역시교육청 등으로부터 가격조정명령 처분을 받았으나, 처분이 된 「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」의 처분의 근거가 된 조항 및 부칙조항의 위법·위헌성(위임한계 일탈, 소급입법금지 원칙 위반 등)이 있고, 처분 자체의 위법·위헌성(신뢰보호의 원칙 위반, 과잉금지의 원칙 위반 등)이 있어 가격조정명령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함.		
주 문	1.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. 2.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		
청구취지	○ 청구취지 - 피고들이 별지1목록의 ‘처분일’란 기재 각 일자에 원고들에게 한 같은 목록의 ‘교과용도서명’란 기재 각 교과용도서에 관한 가격조정명령을 모두 취소한다. ○ 항소취지 -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,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		
판결이유	○ 교육청 인정도서의 경우 - 인정도서의 가격조정에 대한 산정기준 등이 충분한 협의나 이유제시가 없었으므로,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의 이유제시의무 위반하여 이 사건 처분은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함. ※ 처분의 실체적 위법성을 판단하지 않음. ○ 교육부 검정도서의 경우 - (이 사건 조항 제1호)‘실제 발생하지 아니한 제조원가’라고 판단한 금액이 어느 부분이고, 그 금액이 어느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는지를 처분 상대방이 알 수 있도록 해주어야만 원고가 행정구제절차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으나, 처분서에 아무런 기재가 없어 행정절차법상 위법함. - (이 사건 조항 제3호)이 사건 조항 제3호와 가격이 부당하게 결정될 우려는 개념적으로 구별되고 그 상관관계가 곧바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, 위 호의 사유가 인정된다고 하여 가격의 부당성이 당연히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움.		
결 론	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.		